

綵 緞 에 대 한 禁 制

— 朝鮮王朝를 中心으로 —

A Study of Dress Prohibitions

— Mainly in Yi Dynasty —

目 次

- I. 序 論
- II. 綵緞에 대한 禁制의 歷史的 遠因
- III. 服飾奢侈에 따른 綵緞의 禁
- IV. 婚姻 奢侈에 따른 綵緞의 禁
- V. 結 論

淑明女子大學校 家政大學
College of Home Economics
Suk Myung Woman's University

講 師 全 英 淑
Lecturer Jun, Young Sook

Summar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feudal society is the control of the dress and ornamentation which stand for various social classes and 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out the Yi Dynasty, certain forms of dress and ornamentation were controlled or prohibited by the government. For instance, there was a Ban on the use of gold and silver for ornaments and silks or satins for dresses, and the violator was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penal laws.

This seems to have been done more for symbolism and the dignity of the various social ranks and powers than as an economic measure against foreign products. The use of yellow cloth, for instance, was once banned out of blind submission to the traditional practices in China, then the most powerful nation in Asia.

The working classes were prohibited to use any silks of foreign production. This was done to discourage a spirit of wasteful luxury and the tendency to prefer the often higher quality foreign product. The government regulated the dress of the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again as a means of both encouraging economy and reestablishing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classes.

In spite of these attempts at control by the government a large trade in smuggled goods was still carried out. This had the effect of impeding the development of the clothing industry in the country.

I. 序 論

服飾 禁制는 이미 三國時代에도 있었으니, 그 사상적 배경은 新羅 第43代 興德王 9年 服飾禁制令 序頭에 잘 표현되고 있다. 이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上下가 있고 지위에는 尊卑가 있으며 이름도 같지 않은데 衣服 또한 다르다 風俗이 점점 천박하여져서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에 호르고 있으며, 다만 異方의 것을 진기하다 하여 숭상하고 도리혀 土產物을 속되고 천하다 하여 싫어 하며, 분수를 지나쳐 禮儀에 거슬리고 風俗이 쇠락하여 가고 있다. 감히 舊章에 쫓아 써 밟힐 것을 명하노니, 만약 故意로 이를 범하면 常刑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衣服 禁制에 두 가지 主眼點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나는 다스리는 者로서의 계급적인 規制를 가함이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사치를 禁壓한다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封建國家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主眼點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될 수 있으니, 그것은 사치를 금한다는 것이 곧 身分의 等威를 가리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더우기 당시 手工業의 발달의 눈이 海外에 뻗쳐지매 진보된 國家 특히 中國의 衣服 織物이 사치심을 자극하기도 하였으니, 이에서 異方의 물건을 진기하다 하여 숭상하고 우리 나라 土產物을 속되고 천하다 하여 싫어 하는 氣風이 생겨 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高麗·朝鮮王朝를 통하여 하나의 通弊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서 이에 대한 論議 또한 분분한 바 있었다.

高麗 禎王 당시 經筵에서 王이 罔穉에게 禮曹에서 服色을 정했다고 들었는데 그런가 라고 물었을 때 服色을 정한 것은 異土의 물건을 금하려고 함이다라고 하였거니와, 이러한 禁制가 바로 外國產品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여 아울러 사치를 억제하고 身分階級을 뚜렷이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新羅 興德王 服飾禁制令은 細目을 일일이 밝힌 데서 좀더 구체화된 것이지만 이보다 近 500年前 百濟에서는 第8代 古爾王 27년에 品冠 服色을 定함에 있어 官品에 따라 服色을 정하고 平民에게는 「禁 緋紫」하였으니, 아마도 이것이 服飾 禁制의 시초라 하겠으며, 新羅 第23代 法興王 때의 六部人에 대한 四色 公服制度의 제정도 그 정신은 위에서 論한 바 같은 主眼點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服飾 禁令의 정신은 高麗에도 그대로 傳承되어 第4代 光宗代의 四色公服으로부터 第18代 毅宗代의 詳定禮父, 元에 服屬한 이후의 그 服飾의 強要, 그 후의 服色의 制限 등 믿기러웠는데, 이러한 服飾 類別은 곧 禁制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며 官吏는 品階에 따라 服色을 가리고 民庶는 그 本分에 따라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이러한 服飾制限 속에 服飾 禁制는 존재 하였다.

朝鮮王朝에 들어와서는 엄격한 百官服의 제정에서 부터 비롯하여 儉約을 들어 여러가지 禁制가 나오고 있으니, 이를 大別하여 볼 때 金 銀에 대한 禁制, 紗羅綾綺 등 綵緞에 대한 禁制, 服色에 대한 禁制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罰則 또한 엄한 것이 있었다.

대체로 封建國家에 있어서는 服飾 自體가 계급성을 띠우고 있어 이것이 바로 秩序를 表象하여 儀章이 되고 上·下, 尊·卑, 貴·賤의 二元的 構造에 따라 強制性을 갖게 되고 服飾 禁制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 또한 우리에게는 강대한 中國을 등에 업고 있어 事大의 禮를 다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그러므로 위의 金 銀에 대한 禁制, 紗羅綾綺 등에 대한 禁制는 朝鮮王朝에서 볼 때 흔히 이를 經濟的으로 擬裝하여 外國產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실은 이것도 계급적 구조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 무방한 것이며 服色에 있어 특히 黃色의 禁令 같은 것은 中國에 대한 事大思想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에 우리 나라적인 특색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진실로 國民生活에 있어 사치를 몰아내고 儉約을 좇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으니, 특히 婦女子에 있어 各種 修飾品의 제한, 朝鮮王朝 後期에 들어서서의 加嚴의 禁令은 그 하나의 例일 것이며, 이것 또한 服飾 禁制를 論함에 있어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우선 朝鮮王朝의 綵緞에 대한 禁制를 들어 알아 보기로 하였다.

II. 綵緞에 대한 禁制의 歷史的 遠因

綵緞에 대한 禁制는 朝鮮王朝에 들어와서 거의 歷代에 이를 볼수 있다. 그만큼 綵緞은 服飾과 직접 관련해서 奢侈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身分의 上下, 尊卑·貴賤의 等級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음은 머리말에서 논한 바 그대로이다.

三國時代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織物에 있어 長足の 발전을 보여주고 있거니와, 이에 있어 上古文獻에 나타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絹織物……絹, 純, 羅(野草羅, 乘天羅, 越羅, 布紡羅, 錦羅, 罽羅, 各色羅), 紗, 紬(朝霞紬, 魚牙紬), 龍絹, 綿(朝霞綿, 雲布綿, 五色綿, 紫地纈文綿, 大花魚牙綿, 小花魚牙綿, 高麗綿), 綾(小紋綾), 無文獨織

布織物……縹布, 麻布 蘇布, 金總布, 靑布 紵布, 廣幅細布, 黃明細布, 牟韓布

毛織物……罽, 氈氍, 氈, 郕口, 白氈布, 白氈布

高麗時代에 들어와서도 中央에는 都染署·雜職署와 같은 御用的 織造機關 밑에 罽匠·錦

匠·編匠·綾匠·羅匠 등이 있었고, 地方에는 農家副業으로 직조하는 衣類手工業이 발달하여 紵布·麻布·綿紬·綾羅·錦 등을 제조하여 貢物化·商品化 하였으니, 晋州와 慶州는 특히 綾羅 貢出地로 유명하였으며, 淸州의 雪縣子, 安東의 貞縣, 京山府(星州)의 黃麻布, 海陽(南海)의 白紵布도 저명하였다.¹⁾

이러한 衣料手工業의 발달은 中央·地方을 막론하고 王公·貴族의 豪華生活와 朝貢貿易品の 輸出, 中國 등의 外來 絹織物의 영향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며 당시 布紵는 米穀과 함께 貨幣 代用의 역할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朝鮮王朝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手工業들은 沈滯狀態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으니, 中央에는 工曹을 비롯한 各司, 地方에는 各道·各邑에 工匠이 있어 京工匠과 外工匠으로 구별되어 支配層의 威儀를 갖추기 위한 장식품을 만들어 반쳐 왔으나 後期에 가서는 이 官衙所屬의 工匠制度도 거의 壞滅되었고 이들은 이 후 獨立의인 自由生産者로 轉化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商品生産의 길을 開拓하였는지는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다. 또 農家副業으로서의 手工業이 自給自足を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중의 一部가 貢物로 貢納되고 또는 物物交換式으로 去來된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 또한 활발한 것은 못되었다.²⁾

이제 그 原因을 들어보면, 이러한 手工業들이 商品流通을 전제로 하지 않은 自然經濟에 立脚했다는 것과, 商工業의 억제라는 전통적 정책 등에서 온 것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으로 官府 또는 支配層에 의한 혹심한 收奪과 밖으로 中國의 誅求 또는 그 輸入品에 의한 壓迫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니, 初期에 一大問題가 되어 있던 明에 대한 金銀의 貢이 면제된 뒤로 採鑛은 물론 그 工藝生産까지도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라든지 明·淸으로부터 大量 輸入되는 高級 絹織으로 말미암아 技術水準이 그에 미급한 國內의 衣料生産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 등은 그 예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王朝의 絹織物은 그 原絲 그 자체의 粗惡과 더불어 製絲技術의 拙劣로 말미암아 低級者의 紬만이 생산되었으며, 高級品の 생산은 결국 미미한 상태를 끝끝내 면치 못하였다.³⁾

그러한 가운데 紬麻布와 苧布는 朝鮮王朝에 들어와서도 그 織造物에서 더욱 발달되어 소위 貢物로서 中國으로 輸出되었는데, 麻布는 南北 各道에서 생산되는 가운데 後期에는 關北地方이 名産地라 하였고, 苧布는 주로 忠淸·全羅道 海岸地帶에서 나와 末期에 이르러서는 홀로 韓山苧의 이름이 全國에 떨치게끔 되었다.⁴⁾

여기에 高麗末부터 들어온 木綿栽培와 綿織이 급격히 발달하였음을 들지 않을 수 없거니와, 이에서 綿布는 곧 苧麻布와 絹紬를 압도하고 衣料産業을 제편성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世宗代부터는 租稅의 一種으로 麻布에 대신하는 유력한 品目으로 되었고, 中宗代까지는 對口貿易의 支拂手段으로서 또 中宗代 이후로는 軍事財源으로서의 주요한 徵收

對象이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楮貨나 鎔貨 등의 流通이 여러번 勵行되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데 比하여 綿布는 麻布에 대신하여 가장 대표적인 貨幣로서 그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綿業이 이와 같이 그 자체가 質販을 전제로 한 農業으로 발전하지 않고 國家의 需要와 影響으로 성장하여 온 까닭에 壬辰倭亂 후로 國家의 軍布·保布로서의 綿布의 徵收가 가혹해짐에 따라 綿業도 衰退의 一路를 밟게 되었고, 또 그 紡績技術도 初期의 方法을 墨守할 뿐 그 改良이 없어서, 後期에 와서는 이러한 徵收의 가혹과 생산의 감퇴로 말미암아 이 綿布조차도 商品生産으로 轉化하지 못했으며, 初期에는 綿布의 輸出國이던 朝鮮王朝는 國帛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輸入國으로 轉落하게 된 것을 보는 것이다.⁵⁾

위에서 論한 바 이러한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는 各種 織物의 生産이 不進하고 外國 특히 中國에서의 高度로 발달된 綵緞을 보았을 때 貴한 者나 또는 지체는 알더라도 富한 者는 이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니, 이에서 우리 나라 所産 아닌 外國産을 가지고서의 衣服 奢侈의 禁制가 내리게 되고 아울러 身分觀念을 뚜렷이 하고자 하였음은 理解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紗, 羅, 綾, 綺 등 綵緞에 대하여 禁制가 論議되고 禁令이 내린 것을 볼 것 같으면 대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는 奢侈를 억누르고 儉約을 쫓게 하는 가운데 封建主義社會의 특징인 身分의 上下·尊卑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婚姻에 있어 사치하는 풍습이 심해 가메 이에 所要하는 綵緞의 사용을 금지하여 나라의 氣風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Ⅲ. 服飾 奢侈에 따른 綵緞의 禁

太祖 3年 6월에 都評議使司는 金·銀에 대한 禁制와 아울러 紗·羅·綾·綺와 各色 眞彩(顔料)는 外國産인지라 이어대기 어려우니 進上하는 것이나 宮家用 및 各官들 品帶用 외에는 兩府以下 庶民에 이르기까지 일체 이를 禁할 것을 上啓한 바 있었는데, 다시 申聞하라는 王의 命令을 좇아 都評議使司와 禮曹에서는 評定하여,

一. 兩府의 官員 외에는 紗羅綾綺의 衣服을 입을 수 없고 玉纓子·環子를 달 수 없다.

一. 庶人 및 工商賤隸는 비록 有職者라도 銀·絹·斜皮를 사용할 수 없다고 狀啓를 올렸으며, 同年 10月 이에 따라 憲司에서는 金銀綵緞의 禁을 엄하게 申飭하였다.

이것은 太祖 即位 創業의 初에 모든 服飾 器玩은 儉約을 쫓고 萬世에 法을 드리워야 한다는 趣旨에서 나온 것이었다.⁶⁾

太宗 9年 3月에는 모든 婦女의 從婢들은 襪裙을 입지 못하며 笠帽는 苧布만을 사용하되 羅絹을 사용하는 것을 不許하고 그 帽徽의 길어도 主婦와 같아서는 안되니 主婦는 帽徽의

길이 1尺으로 하고 從婢는 길이 半尺으로 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女服의 으뜸이 襖裙과 笠帽인데 主婦나 從婢가 上下의 구별없이 黑羅帽에 白納裙을 착용하고 있으니 값이 비싸 財費가 들 뿐더러 尊卑·賤貴이 분명하지 않고 혼잡을 이루고 있으니 이를 엄히 구별하자는 데 그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⁷⁾

이 禁令은 世宗 11年 2月 司憲府 狀啓 속에서도 볼 수 있으니, 禁令이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여 罪를 犯하고 있으므로 禁令을 간략히 적어 光化門과 서울의 各門에 걸어 놓기로 한 條目 가운데 이것이 들어 있다.⁸⁾

世宗 13年 正月에는 儀禮詳定所의 提調 河寅이 上啓하기를 三品以下の 官吏는 綾羅로 된 옷을 입지 못하는데 그의 妻도 역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고 하였다. 이에 王은 대개 法이 너무 자세하고 복잡하면 실행하기 힘든 법이니 안된다고 하자 代言 등도 婦人의 옷을 어찌 같이 禁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에서 王은 마땅히 詳定所가 狀啓 올린 條目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⁹⁾

世宗 31年 正月에는 議政府에서는 禮曹에서 올린 啓에 의거하여 몇가지 禁制條件을 들었는데, 이는 다음 해부터 施行하기로 하였다. 그 가운데 綵緞에 대한 禁制를 보면 다음과 같다.

一. 九升以上の 衣服과 紗羅綾緞絹으로 된 囊子, 護膝과 眞絲帶, 狹皮靴는 流品朝士, 兩班子弟, 成衆官 외에는 모두 금한다.

一. 兩班의 婦女 및 女妓 외에는 紗羅綾緞으로 된 鞋를 사용하지 못하고, 男子의 경우는 皮革鞋를 신분의 높고 낮음을 물론하고 금지한다.¹⁰⁾

그러나 이 때의 禁制에 대하여서는 文宗 即位年 9월에 禮曹에 教旨를 진하여 그 禁法이 너무나 자세하므로 犯하는 者가 파다하니 이제부터는 금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 措置에 대하여 司憲府에서는 上疏하기를 法을 너무 쉽게 바꾸면 國民들이 그 法을 믿지 못한다 하여 반대하였다. 이에 있어 王은 法을 세워 行하지 않으면 이는 國民에게 믿음을 잃는 것이 되겠지만 弊가 있는 法을 바꾸는데 어찌 믿음을 잃을 것인가 하여 듣지 않았던 것이다.¹¹⁾

이것으로 볼 때 요는 이제나 그제나 法을 세우되 그것이 施行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法 運營의 妙에 달린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成宗 3年 正月에는 禮曹에서 前에 받은 바 있는 教旨에 따라 奢侈를 금하는 節目을 條目마다 적어 上啓한 바 있으니, 이 가운데 綵緞에 관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一. 庶人의 婦女가 앉는 안장 위를 綵緞을 사용하여 다투어 華美에 힘써 실로 奢侈를 지나쳐 방자스러우니 모두 금한다.

一. 富商들은 그들의 큰 財産으로써 다투어 사는 집을 높이 짓고 집에는 혹은 紗糊窓을 사용하며 衣服은 紗羅綾緞을 사용하고 점방에는 龍鳳滿花를 무늬 놓은 자리를 사용하며 그

릇이나 음식이 분수에 넘치고 있으니, 禁令後 法을 따르지 않는 者는 重論하여 沒籍한다.¹²⁾ 여기에 婚姻 奢侈에 따른 綵緞에 대한 禁制條目도 있는데 이는 다음 節에서 들것거리니와 이에서 綵緞은 奢侈를 금한다는 목적 아래서 服飾에만 한하지 않고 生活周邊 전체의 것에 미치고 있는 것을 본다.

成宗 6年 7月에는 承政院에서 奢侈 僭亂을 금하는 法을 草하여 올리기를,

一. 紗羅綾緞을 市場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한다.

一. 中國이나 이웃 나라의 모든 使臣을 接見할 때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宴會를 베풀게 될 때 외에는 비록 堂上官이라 할지라도 금하며, 堂上官의 妻 이외의 女子가 입을 것을 금하고, 또한 倡妓라 할지라도 御前에서 그 재주를 보여줄 때 외에는 금한다.

一. 北京에 행차했다가 정해진 數 외의 물건을 들여온 者를 檢察官이 짐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를 파면하고 叙用하지 않는다.¹³⁾라고 하여 綵緞 사용에 따른 禁制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成宗 14年 3月에는 緞子笠 착용을 禁하였으니, 經筵에서 掌令 李渾이 上啓하기를 지금 모든 사람이 羅緞으로 笠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그 사치함이 이에 이르고 있으니 草笠 외에는 일체 금지함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에 王은 만약 綾緞으로 笠을 만들어 쓰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는 禁해야 하니 勘校廳에 명대 자세히 정해서 啓聞하게 하라고 하였다.¹⁴⁾

燕山君 4年 6月에는 王이 臣下들에 명하여 禮曹에서 바친 奢侈를 금하는 節目을 의논하게 하는 가운데,

一. 衣服에 있어서 儒生은 絹·交綺·交織을 금하고, 士族이 아닌 者는 有無職을 물론하고 絹·交綺·交織을 금하며, 別監中 禁은 差備日은 금하지 않고 남이지는 예대로 한다.

一. 商賈·庶人の 婦女의 紗羅綾綺를 함부로 입을 것은 禮曹에서 上啓한 바 禁令에 따른다 하더라도, 全家族을 변방으로 이사시킨다는 것은 과중하므로 律文에 따르기로 한다.

一. 各官의 紗羅綾綺의 帳褥·案席·鍮蓋兒는 禮曹에서 啓 올린 바에 따른다라고 하였다.¹⁵⁾

中宗代에 외서는 2年 5月에 臺諫에서 上啓하기를 近口 制度를 경하여 婦女가 貂皮·紗羅綾緞의 禁制를 犯하였을 때 그 物件을 告訴人에게 주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좋은 法이 아니므로 시행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王은 이를 不允 하였다.¹⁶⁾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있어서의 密輸防止를 위한 정책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어 흥미로울다.

中宗 11年 10月에는 王과 講官 사이에 紗羅綾緞을 금하는 問題를 놓고 對話가 오고 갔는데, 鄭光弼이 紗羅綾緞의 由來는 이미 오래되어 일체 금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나 王께서 먼저 스스로 儉約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안입게 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金孫은 婦女들이 만드시 鄉織四段을 입으려 하여 집안이 기울어지고 破産하는 일이 그치지 않으니

法을 세워 엄치하지 않으면 사치를 무엇으로 막으리요 하였는데, 金應箕는 한 걸음 더 나아가 婦女의 鄉織匹段은 당연히 모두 금해야 한다면서 사사로이 織造하는 것과 綾羅의 工匠이 마음대로 파는 것도 의당히 法을 세워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李繼孟은 匹段뿐만 아니라 唐物도 모두 금하면 銀을 가지고 나가는 폐도 없게 될 것이라고 同調하고 있다.

이에 있어 王은 侈奢를 금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婦女들의 옷의 匹段은 금할 수 없으니 오직 宰相인 家長들이 각자 감소하면 가히 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¹⁷⁾

여기에서는 綵緞이 外國産이라 해서 그 사용을 금지한 데 대한 範圍를 넘어서 國産 匹段에 대하여서도 금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奢侈를 금한다는 精神 밑에서는 外國産 本土産을 가릴 일이 아니겠지만, 國産 愛用을 장려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萎縮一路에 있는 衣料工業의 발달을 阻害한 要因의 하나가 또한 이것이었다면 당시 爲政者의 政策의 貧困을 아니 들 수 없다.

中宗 23年 8月에는 承政院에 教旨를 傳하여 이른 가운데, 만약 속옷(裏衣)이면 紬나 絹로 된 것도 입을 수 있으나 表衣가 지나치게 얇아 속옷이 모두 밖으로 비쳐서 사람들이 그것이 唐物이고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도 모두 금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¹⁸⁾

이에서 보면 綵緞에 대한 禁制는 婦女子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관대하였듯이 속옷에 대하여서도 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의 表現에서 볼 수 있듯이 外部에 露出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奢侈 禁制의 精神에서 볼 때 이를 빙자해서는 아니됨은 물론이다.

中宗 31年 2月에는 御前 朝講에서 掌令 林鵬이 近者에 服色이 서로 다투어 奢侈를 숭상하고 있는데, 전에는 오직 朝廷의 大會禮나 宴享時에만 紗羅綾緞을 입었으나 지금은 겨우 堂上官에 승진하여도 이를 입으니, 衣服에 해당하는 물건은 비록 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풍습은 좋은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이에 王은 奢侈한 풍습은 사람마다 각자 살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즉 宰相이 犯禁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者도 스스로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 소위 爲政者로서의 自覺과 率先垂範을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⁹⁾

宣祖代에 들어와서 그 25년에는 壬辰倭亂이 일어났고, 이 倭亂은 滿 7年만인 同王 31년에야 끝났으니, 이에 家屋 財産이 파괴되고 田野가 황폐해진 위에 凶年으로 식량이 부족하여 백성은 草根木皮로 생명을 이어 가매 人心은 극히 흉악하여져서 李夢鶴의 反亂 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不過 5년이 지난 同王 36年 8月에는 衣食 奢侈에 대하여 論議되고 있는 것을 보는 바 이것이 지난날의 倭亂의 쓰라린 傷痕을 말끔이 씻고 다시 일어난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기엔 實로 人心은 朝變夕改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서 王은 다음과 같이 이르고 있는 것을 본다.

즉 濫僞를 금하고 奢侈를 革罷하는 것은 憲府의 職責이다. 요즘 듣건데 奢侈의 풍습이 더욱 심해져 常人도 匹段을 입는데, 人君도 이를 貴히 여겨 항상 燕居時에는 錦繡를 입지 않거늘, 어찌 그들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단지 等級을 나누어 엄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至貧한데 애써 豪華하고자 하면 옷 한 벌 구하는 것은 여느 옷 열 벌을 들여 오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되면 반드시 빈궁해지고 풍속 역시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法이 행해져 3日이 채 못가 中止한다 하는데 이는 俗談이다. 大司憲은 3日으로써 限을 삼지 말고 엄히 금단하라. 또 左右의 宰臣의 衣服은 모두 검소하여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데, 常人은 어찌 匹段을 입는단 말인가. 衫服은 자기 品秩이 있으니 宰相은 帛을 입고 堂下官은 苧麻를 입는 것이 可하다. 兩班은 綿紬를 입고 常人은 木布를 입는 것이 可하다. 章服은 단지 等級이 있어 비록 匹段을 착용한다 하더라도 그 추위를 막는데는 어찌 할 것인가……²⁰⁾

宣祖 39年 6月에는 司憲府에서 狀啓를 올려, 臣等은 지난번 聖敎를 받았는데 그 奢侈를 抑禁하여 風俗을 바로 잡으려는 뜻이 지극하고 극진한 것이 있었다고 하고, 法典·禁制 및 司憲府에서 일상 행하는 禁制들을 取考하여 上啓한다 하면서, 法典에서 堂上官은 紗羅綾緞을 입을 수 있다는 文句가 있기는 하나 이는 章服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요즘에는 이와 같지 못하여 燕居服에도 모두 綾緞을 사용하고 있는데, 公卿들은 士民들이 우러러 보는 바로서 儉約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려면 어찌 그 아랫 사람을 검소하게 할 수 있겠는가, 生白紬 및 軟草綠의 表衣에 있어서의 난잡함은 전에 있던 바이나 근래 朝官의 무리들이 공공연히 입고 있으니, 이러한 몇가지 일은 法制에도 관계 없고 禁制에도 없으나 禁條를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禁斷할 도리가 없은즉, 지금부터 堂上官의 燕居服에 綾緞을 사용하는 것과 堂下官의 白紬 및 草綠의 表衣를 일체 금하자고 청하고 있다.²¹⁾

이에 따라 同王 40年 4月條에서 보면, 司憲府에서는 위의 傳敎를 받아 奢侈를 금하는 科條를 세워 犯하는 者는 朝官인 경우에는 파직시킨다 하였는데, 僉知 中樞府事 金繼信은 幘段 褻服(燕居服)을 입었고, 兼良才 道察訪 李貴는 白紬의 單直領을 입었으며, 前承文院 正字 李弘望은 草綠 袂道袍를 입어 本府의 禁吏에게 잡히는 바 되었으니 매우 놀라운 일로써 命해 파직해 달라고 하여, 王이 이를 允許한 바 있었다.²²⁾

仁祖代에 와서는 2年 11月 司憲府에서의 上啓 가운데, 近日 奢侈의 풍습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바 있으니, 무늬 있는 綵緞 옷은 宰相의 公服 외에 常着하는 옷에는 許하지 않는다는 敎旨가 있었는데도, 同知 中樞府事 安玟은 肅拜日에 紫色緞의 裏衣를 함부로 입어 전과 마찬가지로 사치하고 法을 두려워 하지 않는 마음을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은즉 파직하도록 요청한 데 대하여, 王은 推考하겠다고 하였다.²³⁾

그리고 仁祖 10年 2月에는 요즘 매년 水旱 때문에 人民은 가난해 지고 財物은 탕진되었는데도 奢侈는 날로 심해지니 진실로 한심하다 하면서, 章服이 문란해지고 庶人들이 모두 綾紵를 입으니 이것은 商人들이 違背해서 그렇다는 것이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弊習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仁祖 14年 4月에도 前判書 金時讓이 劄子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은 紀綱이 시들고 私意는 만심에 짓고 要路에 賂物을 보내고 부탁하는 일이 크게 행해지고 있으며, 法令은 伸張하지 못하고 貧風은 점차 심해져 奢侈는 점차 절도가 없어지고 있고, 單額은 날로 줄어 들고 있다. 옛 사람들의 말에 奢侈의 禍는 天災보다 심한 것이라고 하였거니와, 天災는 참혹한 것이어서 비록 바랄 것이 아니나, 奢侈의 弊는 財物을 손상하고 그 人物을 병들게 하니 그 禍는 매우 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요즘 倡優 下賤들이 모두 綾紵를 입고, 庶人 僕妾들이 모두 錦繡를 두르고 있으며, 이는 士大夫家에서 더욱 심한 바 있다. 우리 世宗大王은 宮中에서 항상 木綿衣를 입었고 世祖大王은 언제나 純木縷子를 사용했으며 成宗大王은 세탁한 襦衣만을 입어 儉素로서 아래 사람을 이끌어 나라가 풍성하게 되었다. 王께서 진실로 祖宗의 儉德을 본 받는다면 위에서 바람이 불면 밑에 눌지 않는 풀이 없듯이 아래 사람들도 그대로 할 것이다.』²⁵⁾

이 해 末 12月에 淸軍이 入寇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듬 해 正月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淸 太宗에게 항복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곧 丙子胡亂이다. 이 해(15年) 5月에 禮曹에서 服飾 其他에 관한 禁制를 정해 널리 中外에 선포한 것을 보면, 이에 자극되었음이 역력히 보인다.

즉, 堂上官의 國領 戒服 외에는 匹段, 彭段을 입지 못하며, 堂下官은 方絲紵, 花絲紵, 綿紵의 表衣를 입지 못하고, 儒生과 三醫司는 毛衣를 입지 못한다. 士族婦女는 繡로 된 衣裳과 무늬있는 匹段을 사용하지 못하고 首飾에 있어서는 金鳳釵, 珠釧, 圓假鬘을 사용하지 못한다. 庶人은 綿紵 및 毛衣를 입지 못한다. 婚姻時의 納幣의 玄纁은 모두 綿紵를 염색한 것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²⁶⁾

그러나 10년이 지난 仁祖 25年 正月에는 衣服 奢侈에 관한 論難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丙子胡亂後 百官이 戒服으로 從仕해서 上下가 無章하였으나 百官의 冠服 品帶의 제도를 부활한 것도 이 해에 들어서부터였는데, 이러한 國家施策과는 달리 奢侈의 풍습은 여전히였던 것 같다.

持平 李性恒이 上啓하기를 근래 奢侈가 날로 심해져 興臺(下人)와 같은 賤人들이 모두 錦紵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濫雜한 弊를 개혁하여 없애버리길 원한다 하면서, 전날 禁吏가 2名을 잡아 왔는데, 自稱 富家의 사람이라 한 그들의 입은 옷은 한 사람은 紋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唐紵였으니 臣은 그 옷을 태우고 그들을 벌할 것을 즉시 명했었지만 요즘 들기에 持平大監 집에서 와서 그날의 禁令 2名을 잡아 억지로 皂隸의 冠服을 입히고 牌를 채

위서는 前辭하여 소리치며 다녔다 하니, 이러한 것은 法府의 일을 더럽힌 것인즉 罷斥할 것을 명해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다.²⁷⁾

이 한 예로서 당시 宮家 또는 勢道家의 法을 무시하고 橫暴하였음이 어떠하였는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孝宗代에 들어와서는 5年 正月에 領敦寧府事 李景奭이 劄子를 올린 가운데, 奢侈의 風이 고질적인 弊風이 되어 貴賤이 無章하여 興臺(下人)·斯役(머슴)들도 錦衣가 아니면 婚姻하러 하지 않는다면, 紗羅綾絹은 堂下官이 감히 입지 못하는 것인데 三司를 出入하는 官員을 보면 공공연히 上服으로 여기는 者가 많다고 그러고, 또한 옛날의 이르길 城中에서 大袖를 좋아하면 四方에서 모두 匹帛으로 이를 한다고 하는데 이로써 推理해 보진대 오늘의 宮中에는 奢侈한 풍습이 없느냐고 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은 論議는 同王 8年 正月에도 衣服制度를 논하는 가운데 있었다.²⁹⁾

또 孝宗 9年 10月에는 大司諫 李應晷가 上疏한 바에 의하면, 閭井의 士庶집들이 옷은 반드시 錦繡로 하고 飲食은 梁肉으로 하며 심지어 興臺와 같은 賤類들이 公卿을 僭擬하고 僕妾의 무리들은 역시 王后의 장식을 하니, 民產은 어찌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物價는 어찌 뛰어들어오르지 않겠느냐 하면서 더욱 해피한 것은 무릇 釵·釧·衫裳을 만들 때 반드시 宮樣으로 한다니 한 사람이 시작하면 百人이 그것을 따르고 날로 盛해져서 西方이 갈아지는 즉, 伏願컨대 殿下가 朥소 行해 風習을 教化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³⁰⁾

이에서는 國民이 너 나 할것없이 襄證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³¹⁾

英祖 24年 8月에는 通信使가 돌아올 때 日本이 回禮로 바친 彩段 二百匹을 가지고 왔는데 文緞은 國法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王이 이를 불태워 버리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때 洪啓禧가 上奏하기를, 이는 天物을 애석하게 여기는 뜻이 아닌즉 의당히 有司에 보내어 黑色으로 물들인 후 軍兵의 戰服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王은 奢侈의 풍습이 극에 달한 感을 느끼며, 歷朝의 이에 대한 苦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질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英祖 9年 3月條에는 都提調·徐命均이 衣食 奢侈를 금하는 것이 좋겠다 한 가운데 十數萬의 銀으로 唐物을 바꾼다 하였으니, 이 唐物이라 함은 물론 中國產을 말하는 것으로 綵緞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인즉 이 때에 와서도 奢侈의 풍습은 여전하였다는 것을 顯意하고 이에 따랐었다.³²⁾

이것은 마치 그 政策에 있어 解放後 密輸를 根絶시키기 위하여 압수한 密輸品을 불태워 버린 일이 있었으니 이와 방불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여 同年 11月에는 使臣으로 가는 이들에게 綾緞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삼갈 것을 命하면서, 紋이 없는 것도 紋이 있는 경우의 예에 따라 모두 엄히 禁한 바 있었다.³³⁾

이것은 紋緞의 사용을 금지한 후에 北京에 가는 象譯輩들이 紋이 있는 것은 금하였으므로

로 사지 않고 紋이 없는 것을 사왔기 때문이며, 그래서 胡商들은 朝鮮 사람들이 무늬 있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고 이에 모두 紋을 없애고 팔았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가 紗羅綾緞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奢侈의 풍습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그 紋의 有無가 문제될 수 없는 것일진대, 이것은 순진히 나라의 立法의 뜻을 무시하고 法을 惡利用한 所致라고 하겠다.

英祖 26年 3月에는 綵緞 뿐 아니라 紬衣는 겉에 입어 무늬가 있는 上服인데 貴賤·老少의 구별 없이 마구 입으니, 紬를 가지고서는 章服 외에 士·庶 할 것 없이 50歲 이하는 금하도록 하였다.³⁴⁾

이는 奢侈 抑禁을 위한 보다 强硬策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며, 同王 45年 2月에는 教旨에 此後로 國婚 때에도 모두 綿布를 사용하고 紬·緞을 아울러 금하고 있는 것이다.³⁵⁾

正祖代에 와서는 11年 9月에 先朝의 뜻을 받들어 紋緞의 禁을 또한 엄히 내린 바 있었다 王의 분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近來 紋緞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紋이 있는 錦緞이 法을 어기고 나오고 있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 先朝에 法을 설정하니 章服, 戒服, 旗幟에 소요되는 雲紋 외에는 紋錦은 모두 禁制에 들어 있다. 요즘 綾羅紬緞의 紋이 있는 것이 점차 생산되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입는다고 하니, 장차 舊法을 申明하여 엄히 禁斷하고자 한다. 紋을 금하는 것에 대한 丙寅年(英祖22年)에 受敎된 法令은 단지 지엄할 뿐만 아니라 소상하기 그지없다. 廟堂으로 하여금 先祖 때 받은 教旨와 이 傳敎를 가지고 그 밑에 시행할 조건을 붙여 漣府와 譯院에 제시하고 또한 冊子로 찍어 내어 本司 및 여러 法司에 나누어 비치하여 영구히 지키도록 하라. 이는 대개 先朝의 儉素를 숭상하고 비용을 생략하려는 뜻을 소명하기 위함이다. 宮中에서 지금에 입는 것을 보면 法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諸臣들이 먼저 家內的 婦女들에게 각자 이를 금하게 하면 閭巷에서는 스스로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象譯輩 역시 어찌 감히 나라의 法을 어길 것인가. 이는 실로 根本을 바로 잡기 위한 정치이니 이러한 뜻으로 嚴飭하라』³⁶⁾

그리하여 犯法者를 엄히 다스렸으니 그 한 例로서 同王 23年 8月條에 보면, 漣府에 명해 罪囚 金象望德을 滅死하여 遠島에 充役하게 하고 그 妻에게 米布를 厚하게 주었다는 記錄이 있으니, 金象望德은 紋緞으로서 禁制를 범한 者로 死刑을 받았었는데, 그의 妻 戚女가 옥살이 하는 男便에 대하여 지극한 옥마라지와 함께 자기 몸으로써 男便의 복습을 대신하여 줄 것을 청하여 20年이나 해서 義州府尹 李基讓이 上奏하여 이러한 特赦가 내렸던 것이다.³⁷⁾ 당시 奢侈 禁制에 대한 罰則이 얼마나 엄했었는가를 알 수 있다.

純祖代에 와서도 衣服 奢侈를 금한 것이 보이는 가운데 그 근원이 되는 綵緞이 使臣에 수행하는 者나 장사처에 의해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搜檢해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同王 34年 2月 左議政 沈象奎가 啓를 올려 節儉 두 字는 殿下의 家法인데 항차 지금은 饑饉이 거듭 닥쳐 나라 살림이 말이 아닌 바 만약 조금이라도 節損에 소홀하다면 단지 儉德에 累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장차 災患이 그치지 않게 되고 危急한 때를 당하여 넘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 近來朝廷의 윗 사람들이 사치가 날로 심하여 堂下官의 章服은 紗羅가 아니면 부끄러이 여기며 婚具는 모두 錦綺를 사용하는 바 이것을 委巷에서 구하니 匹庶들이 따라 본받는즉 分數를 넘고 法을 업수이 여김이 이와 같으니 人民이 어찌 財産을 窮竭하지 않겠느냐, 紋緞을 금하는 事目은 분명히 엄하나 邊門의 搜檢은 하나도 없으니, 今年부터 시작하여 譯院 및 驛府에 명하여 象胥와 商賈中 만약 禁物인 紋緞을 가지고 오는 者 있으면 모두 禁制事目에 의해 依法 搜檢하여 狀啓를 올리도록 하는데, 실제대로 올리지 않으면 邊臣도 역시 潛費禁物之律로 다스리자 하여, 王이 이에 따르도록 하였던 것이다.³⁹⁾

高宗代에 들어와서 23年 3월에 내린 教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服飾에 대하여서는 定式이 있는 바 이는 貴賤을 구별하고 財用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요즘 보전대 신분에 맞지 않는 사치의 풍습이 만연하여 紀極이 없다. 閭巷人들과 畊隸의 무리들이 합부로 紋繡를 加하여 다투어 紉縠을 입으니 貴賤의 구별이 없고 法綱은 무너졌다. 한 벌 옷의 비용이 編民 一家의 財産보다 더하니, 이와 같을진대 어찌 財用이 군색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民生이 어찌 어지러워지지 않겠는가. 이제 朝臣 이하 一切의 衣式은 그 等級을 잡아 감혀 踰越치 말 것이니, 이것은 실로 行하여서 申明하려는 뜻이다. 廟堂에서는 定式을 참고하여 科條를 엄히 세워 節目을 이루어 드리게 하라.』³⁹⁾

이에서 服飾 奢侈에 따른 綵緞 사용의 禁의 보다 뚜렷한 精神을 알 수 있는 것이며, 朝鮮王朝를 통하여서의 이를 바로 잡기 위한 歷朝의 苦衷을 또한 알 수 있다.

IV. 婚姻 奢侈에 따른 綵緞의 禁

世宗 5年 正月에 禮曹에서 狀啓를 올리기를 女子를 시집보내는 집안에서는 衾·褥·服飾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그 뒤를 이어낼 수 없는 물건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물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이에 구애받아 婚期를 놓치는 수가 파다한데, 이제부터는 衾과 褥에는 綾錦段子를 사용하는 것을 금할 것이며, 新婦의 服飾도 또한 오로지 紗羅綾緞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인즉 집안의 貧富를 헤아려 우리 나라에서 나는 紉·紵·縠布를 쓰도록 함이 좋겠다 하여 王이 이에 따랐다.⁴⁰⁾

世宗 9年 11월에는 司諫院에서 婚姻에 있어 그 奢侈를 抑禁할 것을 上言하는 가운데, 婚姻할 때에는 綾緞을 사용하지 못하고 紉나 縠布를 사용하라는 法令이 法典에 있는데 풍속에는 헛된 사치를 숭상하여 우리 나라에서 나는 물건을 부끄러이 여기고 婚期를 놓치는 것이 주로 이에 연유하고 있어 관계 관청에서 금하려고 하니 어찌 女子들이 사는 閨門을 모

두 살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이제부터 대궐안의 임금님의 경우나 대궐밖의 臣下의 경우 金銀 같은 것을 일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儉素를 숭상하는 氣風을 일으키면 婚姻을 당한 집안이 異方의 綾緞 같은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또한 婚期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⁴¹⁾

이와 같은 婚姻 奢侈에 따른 綵緞에 대한 禁制는 이후 歷代에 자주 있었는데, 國婚에 있어서의 婚姻 奢侈에 대하여서도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을 본다.

즉, 世宗 26年 10月의 傳旨에서 보면, 王子의 嘉禮에 婦家에서 衣服·笠靴·鞍馬를 相贈하는데 珍珠美玉을 求하고 綾羅綵緞으로 衣服·鞍馬의 장식을 하고, 王子의 從者와 乳母의 衾被에 이르기까지 모두 綵緞을 가지고 하여, 家財 什器가 數十車에 이르러 成禮後에는 婦家の 財産을 탕진하게 되니 그 폐단이 컸다고 하였다.⁴²⁾

이 하나의 예로써 일반 宮家나 勢道家의 閨中에서 얼마나 사치를 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동시에 그 폐단은 위에서도 든 바와 같이 일반에 있어서의 婚禮에도 그 영향이 미쳤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따라 禁令도 마땅히 나올 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綵緞은 中國産인 唐物인데, 太祖·太宗代까지는 開城 商人들이 國境을 넘어 가져오던 이 唐物을 이제는 使臣 行次에 따른 合法的인 方向에서 가져오게 된 것을 본다. 그리하여 使臣과 譯官들은 각자가 가지고 가는 元額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包에다 額數를 느리고 또한 금지된 물품은 가져갈수 없으니 米布를 가져가서 彩帛을 貿易해 왔는데, 이에 대한 事實은 다음 代인 文宗 元年 4月條 記錄에서 볼 수 있다.

이에 있어 文宗은 使臣들이 이와 같은 弊를 끼치는 것은 婦女 服飾에 彩帛을 쓰기 때문에 冒法者가 많이 생기는 것이니 아주 婦女 服飾의 彩帛을 금하고 우리 나라 土産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同副承旨姜孟卿은 世宗朝에 이미 禁令이 있는데 우리나라 習俗이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고칠 수 없을 뿐 아니라 婦女들이 閨中에 숨어 있으니 士大夫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禁斷하기도 난처하다고 답을리고 있다. 이에 王은 婦女는 반드시 族會에 복종해야 하니 어찌 금하기 어려울 것이냐 하면서, 진실로 法을 지키는 한 사람의 집안이 綵緞을 쓰지 않고 土産物을 쓴다고 하면 비록 지금 당장 금할수는 없어도 사람들이 장차 보고 들어 이를 본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 그의 對答을 一蹴하고 있다.⁴³⁾

여기에서 우리는 金銀에 대한 禁制에서 본 바와는 또 다른 方法으로서의 外國産 物品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경위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弊端과 이에 대한 論難에 대하여서는 위의 服飾 奢侈에 따른 綵緞의 禁에서 거듭 提及한 바 있다.

成宗 3年 正月, 禮曹는 臣에 받은 教旨에 따라 사치를 금하는 節目을 條目마다 적어 上啓한 가운데 婚姻 奢侈에 따른 綵緞의 禁制를 보면 다음과 같다.

一. 續六典 婚姻條를 보면 衾被를 모두 綿紬·絛布를 사용하고 綾錦段子를 사용할 수 없

으니, 新婦의 衣飾은 緞이 부유하고 아니고 간에 반드시 紗羅綾緞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데, 요즘의 婚姻은 이러한 制度를 벗어나 納綵할 때는 반드시 綵緞을 사용하고 사위 즉 新郎 집 用이라 하여서는 綵緞·金銀器皿을 가지고 兩籠을 채워 미리 보내고 있어 그렇지 않은즉 다른 사람들이 모두 비슷하며, 시부모를 뵈는 날 宴饌은 數十가지에 이르고 新郎 집에서 대개 布帛으로서 이에 답하는데 서로 다투어 華侈하기에 힘쓰고 있으니, 이 때문에 緞이 가난하여 이것을 준비할 수 없어 婚期를 잃는 자가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續六典에 실린 舊制에 의하여 禁斷한다.⁴⁴⁾

이와 같은 내용은 同王 4年 7月에도 學論되고 있는데, 이 때에 旱魃이 들어 이것이 政治가 잘못 行해진 때문이라 보고 그 대책을 藝文館 副提學李克基 등이 上疏한 가운데 하나로 나오고 있다.⁴⁵⁾

그레도 婚姻매의 사치는 근절되지 않아 同王 13年 2月에 王과 臣下間에 주고 받은 對話를 보면 당시의 風潮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執義 姜龜孫이 上啓하기를 우리 나라 婚禮는 이미 분명한 법이 있으니 자기 그 품에 따라 法을 어김이 없도록 하였는데, 지금 들전대 申澣이 韓調과 約婚하는데 納綵에 絲金을 쓰고 朱紅色의 函에다 紗羅綾緞 15匹 銀 1丁을 채우고 그것을 큰 紅色 匹緞으로 싼다고 하니 澣이 그 禁制를 모르는 바 아닐진대 그 豪富를 과시하려고 가벼이 憲章을 犯한 것인즉, 청컨대 罪를 심문하여 罰을 주라고 하였다. 이에 正言 鄭光世는 近日 姜子平이 約婚하는데 段子 1匹로 폐백을 삼았는데 그 집 사람들은 너무 적어 우리를 기뻐이 여겨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걱정했다고 하는데, 風俗이 사치를 좋아함이 이와 같다고 하면서 申澣의 일은 臣 자기도 역시 들었다고 하니, 이에 王이 左右에 묻자, 領事 李光培는 옛날의 納綵는 다만 보자기 안에 楸裏·裳衣뿐이었는데 요즘 풍속이 사치를 숭상함이 이와 같은즉 婚姻에 失期함이 이 때문이다 라고 하매, 王은 이는 과인 弊風이니 司憲府는 그 罪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⁴⁶⁾ 그리고 同年 6月의 婚姻時 店物의 禁도 곧 이를 말한다.⁴⁷⁾

燕山君代에 들어와서는 3年 正月 臺諫 上啓에 婚姻 奢侈를 금하자는 가운데, 婚姻 때에 紗羅綾緞을 사용금지 못한다는 법이 이미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자가 파다하니 일체 봉건히 금하자고 하였다.⁴⁸⁾

中宗 11年 11月에 司憲府에서 上啓한 것을 보면 紗羅綾緞은 이미 禁令을 내렸으니 이는 法司에서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婚禮는 반드시 밤에 올려 禁亂하러 나가도 지지해 낼수가 없으니, 士大夫들이 자자 그 집안에서 紗羅綾緞을 금하고 억제하면 자연이 풍속이 될 것이라고 하여, 결국 自肅의 건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⁴⁹⁾

이것은 오늘날 家庭儀禮準則이 發効된다고 하니 다투어 結婚式을 올리고 있는 요즘의 악삭바른 世態와 상통되는 것이기도 하다.

明宗代에 들어와서는 8年 8月에 司諫院에서 上啓한 가운데 婚喪 奢侈에 관한 것이 보인다

즉, 司諫院에서는 法을 세워 지키지 않으면 法을 세우지 않고 그치는 것만 못한데, 婚喪의 사치를 금하는 것을 申明하는 法이 하나 둘이 아니었던만 法을 우습게 보는 일이 많다. 婚姻하는 집안은 사치를 다하기에 힘써 納采에는 玄纁을 사용하는 法인데도 불구하고 富貴한 집안에서는 모두 이에 紗羅綾緞을 사용하여 그 數는 적어도 10匹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法司에 명령하여 특별히 糾察을 가하도록 청하며, 王은 婚姻 華侈의 糾察은 朕에 따르라고 하였다.⁵⁰⁾

肅宗代에 와서는 41年 9월에 司憲府에서 閭巷의 奢侈를 論하는 가운데, 婚禮에는 반드시 寢帳을 錦綉로 사용하고 있으며, 納幣는 玄纁 2段으로 하는 것이 國俗인데도 閭巷의 富者들은 金·銀·珠의 貝 또는 紗綾之屬으로써 兩을 채우고, 이보다 못한 者나 할지라도 역시 紉綿으로 채워 서로 과시하니, 가난한 者는 無力하여 이것을 갖추지 못하는 까닭에 큰 人倫이 때를 잃고 끝내 妻를 얻지 못하는 者가 있을즉, 이제부터 婚禮 때 帳을 사용하는 것과 齊幣는 들을 넘는 것을 禁制에 첨가하여 禁斷하자고 하였다.⁵¹⁾

英祖 45年 2月에는 此後로 國婚때 모두 綿布를 사용하기로 하고 紉·緞을 아울러 금하였다.⁵²⁾

純祖 34年 2月에서 左議政 沈象奎가 啓를 올린 가운데 婚貝는 모두 錦綺를 사용하는 바 이것을 委巷에서 구하니 匹庶들이 따라 본받아 分數를 넘고 法을 업수이 여김이 이와 같은 즉 人民이 어찌 財産을 窮竭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譯院 및 濟府에 명하여 象符와 商賈中 만약 禁物인 紋緞을 가지고 오는 者가 있으면 모두 禁制事目에 의해 依法 搜檢하여 狀啓를 올리도록 하는데 만약 실제대로 올리지 않으면 邊臣도 역시 潛賈禁物之律로 다스리자고 하여 王이 이에 따랐다.⁵³⁾

婚禮는 人生 一代에 가장 큰 慶事라하여 自古로 奢侈를 다해 오던 것인데 그것이 朝鮮王 朝時代에 얼마나 극성스러웠던가를 위에서 보아 왔다. 그리고 이에 納幣에 所要되는 綵緞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어 朝廷에서는 이에 대한 禁制를 빈번히 내렸으나 끝내 잘 施行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다.

V. 結 論

위에서 朝鮮王朝의 服飾 禁制 가운데 綵緞에 대한 禁을 알아 보았다.

封建主義 社會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強調되고 있는 것은 身分의 上·下, 尊·卑·貴·賤을 구별하여 階級社會를 維持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타난 것의 하나가 服飾의 禁制이다.

服飾의 禁制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面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서 특히 綵緞에 대한 禁을 알아 본 것은 그것이 가장 奢侈心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 土産

品이 아니고 外國產이라 한데서이기 때문이다.

奢侈 禁歷이 위에서 말한 바 封建國家에 있어서는 대개 그 근본정신이 階級社會를 유지 하고자 한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綵緞의 사용이 그 하나이면서 여기에서의 특색은 그것이 外國產이라는 擬裝下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禁制는 奢侈의 풍습을 없애고 儉約의 氣風을 振作하여 나라의 紀綱을 세 운다는데서 나와 王도 苦心했고 朝臣도 또한 근심했으나 제대로 施行되지 않아 論難이 거듭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위의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고 어느 일부에만 강요될 수는 없는 것인 것이다. 그리하여 爲政者 自身の 自覺과 率先垂範을 촉구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대체로 歷史上 禁制로 나타난 것은 곧 일반이 이를 行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證據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綵緞에 대한 禁의 경우 그것이 服飾 奢侈品을 위해서이건 婚姻 奢侈品을 위해서이건 일반이 너 나 할것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의 服飾面을 생각할 때 그 衣料가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外國產 綵緞은 外國으로 나아가는 使臣들의 손에 의해서 또는 國境을 넘나드는 장사치에 의해서 密貿易되고 있는 것을 보아 왔다. 그리하여 그것은 國內 衣料工業 發展에 큰 癌이 된 것도 사실이었다.

- 註 1. 禮禮學會發行 韓國史 中世篇 306~307面 參照
 2. 上揭書 近世前期篇 780面 參照
 3. 林圀十六志 展功志 卷二 參照
 4. 禮禮學會發行 韓國史 近世前期篇 780面 參照
 5. 上揭書 781~782面 參照
 6. 太祖三年六月 卷六 一張 및 5 張 參照
 7. 太宗九年三月 卷十七 十五張 參照
 8. 世宗十一年二月 卷四十三 十三~十四張 參照
 9. 世宗十三年正月 卷五十一 十三張 參照
 10. 世宗三十一年正月 卷百二十三 六~七張 參照
 11. 文宗元年四月 卷七 八張 參照
 12. 成宗三年正月 卷十四 十二~十三張 參照
 13. 成宗六年七月 卷五十七 九~十張 參照
 14. 成宗十四年三月 卷百五十二 十四張 參照
 15. 燕山君四年六月 卷二十九 二十一~二十二張 參照
 16. 中宗二年五月 卷三 十一張 參照
 17. 中宗十一年十月 卷二十六 四十三~四十四張 參照
 18. 中宗二十三年八月 卷六十二 四十九~五十張 參照
 19. 中宗三十一年二月 卷八十一 十七~十八張 參照
 20. 宣祖三十六年八月 卷百六十五 十四張 參照

21. 宣祖三十九年六月 卷二百 十二~十三張 參照
22. 宣祖四十年四月 卷二百十 一張 參照
23. 仁祖二年十一月 卷七 二十九張 參照
24. 仁祖十年二月 卷二十六 十張 參照
25. 仁祖十四年四月 卷四十二 十九~二十張 參照
26. 仁祖十五年五月 卷三十四 五十四張 參照
27. 仁祖二十五年正月 卷四十八 一張 參照
28. 孝宗五年正月 卷十二 五張 參照
29. 孝宗八年正月 卷十八 二~三張 參照
30. 孝宗九年十月 卷二十 四十二張 參照
31. 英祖九年三月 卷三十三 三十一張 參照
32. 英祖二十四年八月 卷六十八 十三張 參照
33. 英祖二十四年十一月 卷六十八 二十七張 參照
34. 英祖二十六年三月 卷七十一 十三張 參照
35. 英祖四十五年二月 卷百十二 十一張 參照
36. 正祖十一年九月 卷二十四 二十七~二十八張 參照
37. 正祖二十三年八月 卷五十二 十六張 參照
38. 純祖三十四年二月 卷三十四 三張 參照
39. 高宗二十三年正月 卷二十三 六~七張 參照
40. 世宗五年正月 卷十九 二張 參照
41. 世宗九年十一月 卷三十八 十二張 參照
42. 世宗二十六年十月 卷百六 十二張 參照
43. 文宗元年四月 卷七 八張 參照
44. 成宗三年正月 卷十四 十二~十三張 參照
45. 成宗四年七月 卷三十二 十八張 參照
46. 成宗十三年二月 卷百三十八 六張 參照
47. 成宗十三年六月 卷百四十二 六張 參照
48. 燕山君三年正月 卷二十一 二十五張 參照
49. 中宗十一年十一月 卷二十六 六十二張 參照
50. 明宗八年八月 卷十五 十七張 參照
51. 肅宗四十一年九月 卷五十六 十張 參照
52. 英祖四十五年二月 卷百十二 十一張 參照
53. 純祖三十四年二月 卷三十四 三張 參照

參 考 文 獻

1. 歐陽修, 新唐書
2. 金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 서울: 韓國研究院, 1963
3. 金東旭, 李朝 中 後期の 女服構造. 亞細亞女性研究. 第三號, 1964
4. 金富軾, 三國史記. 서울: 朝鮮史學會, 1940
5. 金元龍, 高句麗 古墳壁畫의 起源에 대한 研究. 震壇學報, 第二十一號, 1960

6. 今村軻, 朝鮮風俗集, 京城: 斯道館, 1914
7. 姚思廉, 梁書
8. 苑擘, 後漢書
9. 房元齡, 晉書
10.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京城: 近澤書店, 昭和 7年 1932
11. 石宙善, 우리나라 被服歷史, 韓國藝術總覽資料編
12. 石宙善, 韓國被服史, 서울: 寶晉齋, 1971
13. 令狐德棻, 周書
14. 魏徵等, 隋書
15. 劉詢, 舊唐書
16. 柳喜卿, 韓國女性服飾의 研究 韓國女性社 II 別刷, 1972
17. 柳喜卿, 文獻에 나타난 李朝時代 女子服飾考 韓國女性文化論叢, 1958
18. 柳喜卿, 李朝의 百官服 家政學論文集 編輯委員會, 1968
19. 李能和, 朝鮮女俗考, 京城: 東洋書院 昭和 2年 1927
20.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21. 李裕元, 林下筆記 大東文化研究所版, 서울; 1961
22. 李瀛, 星湖僊說類選, 京城: 文光書林, 1915
23. 李緯, 四禮便覽, 木板, 1844
24. 李延壽, 北史
25. 一然, 三國遺事, 서울: 東國文化社, 1956
26. 鄭麟趾, 世宗實錄
27. 震壇學會, 韓國史, 서울: 1959
28. 陳壽, 三國志
29. 朝鮮總督府中樞院,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 昭和 19年, 1944
30. 朝鮮總督府中樞院, 李朝實錄風俗關係資料撮要, 昭和 14年, 1939
31. 朝鮮總督府, 朝鮮의 服裝
32. 崔南善, 朝鮮常識風俗篇, 서울: 東明社 1948
33. 崔恒, 經國大典,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版, 昭和 9年, 1934
34. 黃喜, 太宗實錄
35. 高麗史, 서울: 延禧大學校 東方研究所刊, 1961
36.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景印本, 1955
37. 增補文獻備考, 서울: 古典刊行會 景印本, 1955